

의안번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11. 11. . (제179회)

의결사항

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

(안철우·강철우·조선제·류영수·이애숙의원 공동발의)

발 의 자	안철우·강철우·조선제· 류영수·이애숙 의원
발의연월일	2011. 11. 16.

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

(안철우·강철우·조선제·류영수·이애숙의원 공동발의)

의안번호	제76호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11. 11. 16.

발 의 자: 안철우·강철우·조선제,
류영수·이애숙 의원

1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 등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원·위원회·군수는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함(안 제3조)
- 나.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,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, 재원조달방안, 추계의 상세내역, 관련 의견 등을 포함하여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 동안의 비용에 대한 추계여야 함. 다만, 재원조달방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함(안 제5조)
- 다. 재원조달방안은 의존수입, 자체수입, 지방채 발행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(안 제6조)
- 라. 모든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 소관 집행 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 의견수렴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생략(의원 발의)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 등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비용추계서”란 발의·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(이하 “비용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추계(이하 “비용추계”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
2. “세출”이란 군 일반회계·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.
3. “세입”이란 군 일반회계·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.

제3조(비용추계 대상) ① 군의회 의원·위원회 및 군수가 발의·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제4조(비용추계 제외대상)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비용추계의 작성) 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,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, 재원조달방안, 추계의 상세내역, 관련 의견,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. 다만, 재원조달방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.

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,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.

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,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.

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

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,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.

⑥ 비용추계는 비용을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, 성질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.

⑦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,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·제안 또는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.

제6조(재원조달방안의 작성)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·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수입, 지방세수입·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, 지방채발행,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할 때 관계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③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어야 한다.

제7조(작성 및 제출시기) ① 모든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 소관 집행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8조에 따른 조례·규칙심의회 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③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○○○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-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- 비용추계의 결과
 - 추계의 전제
 - 추계의 결과

〈예 시〉

구 분	1차년도 (00년)	2차년도 (00년)	3차년도 (00년)	4차년도 (00년)	5차년도 (00년)	합계
총 비용(a - b)						
세출	0					
	0					
	소계(a)					
세입	0					
	0					
	소계(b)					

3. 관련 의견

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작성자 : ○○○실·과·소장 ○○○

작성요령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: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거창군의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규정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.

2. 비용추계의 결과
 - 가. 추계의 전제 :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, 비용추계기간,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.

 - 나. 추계의 결과 :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,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.

3. 관련 의견 :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.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,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.

○○○안 재원조달방안

1. 부문별 재원분담계획

재원 조달		1차년도 (00년)	2차년도 (00년)	3차년도 (00년)	4차년도 (00년)	5차년도 (00년)	계
의존 재원	소 계(백만원 %)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(백만원 %)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(백만원 %)							
기 금(백만원 %)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 (백만원 %)							
기 타(백만원 %)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2. 관련 의견

3. 협의사항

4. 작성자

○○○실·과·소장 ○○○

○○○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2. 미첨부 근거 규정
(제4조제1항 중 제○호에 해당되는지 표시)
3. 미첨부 사유
(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
관련자료 제시)
4. 작성자

○○○실·과·소장 ○○○

관 련 법 규

□ 지방자치법

- 제66조의3(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